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번호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 규정 고시번호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11조)
 - 조문내에 표현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등의 고시번호를 삭제하여 규정 적용의 유연성 확보
- 조문 번호체계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29조)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 3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22.6.30)이 도래되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000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266호)”를 삭제한다.

제8조 “가.”를 “1.”로, “나”를 “2.”로, “다”를 “3.”으로, “라”를 “4.”로, “마”를 “5.”로, “바”를 “6.”으로, “사”를 “7.”로, “아”를 “8.”로, “자”를 “9.”로, “차”를 “10.”으로 한다.

제9조 “가.”를 “1.”로, “나”를 “2.”로, “다”를 “3.”으로, “라”를 “4.”로 한다.

제11조의 제1항 ““(개정)한국점자규정(문화관광부 고시 2006-39호)’을”을 ““(개정)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로 한다.

제29조 “가.”를 “1.”로, “나”를 “2.”로, “다”를 “3.”으로 한다.

제31조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안) |
|---|---|
| <p><u>가.</u> 문화관광 <u>나.</u> 교통시설 <u>다.</u> 공공시설 <u>라.</u> 편의시설 <u>마.</u> 보건복지 <u>바.</u> 보행시설 <u>사.</u> 식생 <u>아.</u> 경계 <u>자.</u> 지형 <u>차.</u> 주기 및 난외 사항</p> <p>⑤ ~ ⑧ (생략)</p> | <p>1. 문화관광 2. 교통시설 3. 공공시설 4. 편의시설 5. 보건복지 6. 보행시설 7. 식생 8. 경계 9. 지형 10. 주기 및 난외 사항</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선의 구분) ① ~ ② (생략)</p> <p>③ 선의 높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u>가.</u> 축지기호의 높이 및 크기, 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축지하기 쉬운 적절한 높이로 한다.</p> <p><u>나.</u> 선의 높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0.3mm 이상의 범위로 한다.</p> <p><u>다.</u> 재질에 따라 높일 수 없는 경우 ‘나’에 지정된 높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p> <p><u>라.</u> 구성하는 선의 굵기, 높이 및 간격은 손가락으로 축지할 때</p> | <p>제9조(선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p> <p>2. ----- ----- -----.</p> <p>3. ----- ----- -----.</p> <p>4. ----- -----</p> |

| 현 행 | 개 정(안) |
|---|--|
| <p>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④ (생략)</p> | <p>----- -----.</p> <p>④ (현행과 같음)</p> |
| 제10조 (생략) | 제10조 (현행과 같음) |
| <p>제11조(점자의 표현) ① 점자지도에 포함되는 점자는‘(개정)한국 점자규정(문화관광부 고시 2006-39호)’을 준수하여 표현한다. 다만, 점자지도 표현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로쓰기를 적용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 <p>제11조(점자의 표현) ① -----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제12조 ~ 제28조 (생략) | 제12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 |
| 제4장 주기 및 난외사항 | 제4장 주기 및 난외사항 |
| <p>제29조(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 ① ~ ④ (생략)</p> <p>⑤ 주기 및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가. 지도 도곽 나. 지도 설명 도곽 다. 기타 필요한 사항</p> | <p>제29조(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지도 도곽 2. 지도 설명 도곽 3. 기타 필요한 사항</p> |

| 현 행 | 개 정(안) |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30조 (생 략) | 제30조 (현행과 같음) |
|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u>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u>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재검토기한) ----- ----- ----- ----- <u>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u> ----- ----- ----- -----. |